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명령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

①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② 처분기간 : 2020. 11. 13.(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③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 ① (생략)
-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4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 **중점·일반관리 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추가 가능(삭제 불가)

1.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중점관리시설 9종 >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 대중교통 등: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을 하는 유선 및 도선

3.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4.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5.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6.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7.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 · 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8.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9.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10. 이외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5 마스크 종류

1.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2. (가능)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3. (불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6 마스크 착용법

1.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2. 이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7 마스크 착용 지도 · 점검 및 과태료 부과

1. 지도점검 및 단속

- 시장 · 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2.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

3.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 내 감경

4.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및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①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②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결혼식 관련 마스크 착용 기준 >**

구 분	마스크 착용 기준			
	예식 전	예식 중	예식 후	피로연장
신랑·신부	신부대기실에서 기념사진 촬영 시 신부 제외한 전원이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예외	마스크 착용 예외	음식물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혼 주	마스크 착용, 하객과 기념사진·영상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예외	마스크 착용 예외	기념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예외, 그 외 마스크 착용	
하 객* (친인척·지인 등)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기념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예외, 그 외 마스크 착용	

* 하객은 예식 중 합성 자제, 기념 촬영 중에는 말하지 않기
(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에서 하객은 상시 마스크 착용, 기념 촬영 시 포함)

⑧ 기타사항

1. 처분사유 : 충남도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①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식품의약품안전처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①과 기저질환자^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걸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

-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마스크 선택법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마스크 폐기법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